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자금대출로 인한 금융활동 상 불이익 금지 의무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88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 의원 등 19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14.
3. 회부연월일 : 2025.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이 여타의 금융권 대출에 비하여 신용을 낮게 평가받고 있어 향후의 금융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은 모든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로 인한 대학생의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학자금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학자금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의 책무) (생략)	제5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국가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¹⁾(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함)은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정의하고 있음.

학자금대출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1) 장학재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據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²⁾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대출은 그 특성상 학기마다 대출을 받아야하므로 대학생들은 졸업때까지 여러 번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학기별 개별 채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됨.

금융기관은 보통 3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사람을 다중채무자로 분류하며, 다중채무자로 등록되면 신용평점³⁾ 산정, 금융기관 내부 여신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출 규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등의 금융활동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4년 간 대학생활 기간 동안 매 학기마다 학자금대출을 받으면 총 8건의 대출건수가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됨. 대학교 졸업 후 사회초년생의 경우, 통상 금융이력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대학생이 다중채무자로 등록되면 추가적인 대출 한도와 금리가 불리해지거나, 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2) 이찬희, 권기현, 대출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 영향 요인 연구,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제24권제1호, p27., 2024.3.

3) □ 개인신용평점

- (정의)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지표
- (평가 요소 및 활용 비중)

평가 요소	평가 요소의 상세내용	활용비중
상환이력	현재 연체 및 과거 채무 상환 이력	30.6%
부채수준	채무 부담 정보 (대출 및 보증채무 등)	26.4%
신용거래기간	신용 거래 기간 (최초/최근 개설로부터 기간)	13.3%
신용형태	신용 거래 패턴 (체크/신용카드 이용 정보)	29.7%
계		100.0%

자료: NICE 평가정보회사

이는 곧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되지 않게 하려는 학자금대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개정안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사회초년생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2024년 기준 전체 재학생 약 159만명⁴⁾ 대비 38.9%인 약 62만명이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사회로 진출할 대학생들 상당수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됨.

< 최근 3년간 학자금대출 대출 현황 >

(단위: 억 원, 명)

구분	2022		2023		2024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8,264	359,662	7,918	318,489	8,762	309,647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8,082	202,402	10,950	282,223	12,352	307,804
합계	16,346	562,064	18,868	600,712	21,114	617,451

자료: 교육부

다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대

4)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학생생활 동안 여러 건의 학자금대출을 1건으로 산정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평가, 금융기관 대출심사에 반영하기 보다 학자금대출은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에 반영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나 대출심사 시 학자금대출의 반영 비율을 낮추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인 금융위원회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기별로 여러번 실행되더라도 총 1회로 간주하여 신용에 반영하도록 하여 그간 지적되었던 학자금대출이 다중채무로 간주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⁵⁾

또한 향후에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신용평가회사,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의 “불이익”이라는 의미가 다소 광범위하므로 “부당한 대우”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 또한 교육부와 같이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5)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료('25. 2.)

□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계획

- (현행) 학자금대출 특성상 여러 번(학기별 등)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대출이 개별 건으로 취급
→ 다중채무자로 분류되어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
- (개선)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
 - 신용평점 산정, 금융기관 내부 여신심사 등과 관련한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사회초년생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활동 지원

“불이익”을 “부당한 대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원칙적으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평점(등급) 반영 기준은 민간 신용평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로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자들이 그 외의 금융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개 정 안	정 부 수 정 안
제5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u>불이익을</u>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국가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u>부당한 대우를</u>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93